

## 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확진 시 공결인정 방침 안내

2023학년도 2학기 학기 중 코로나19 확진 시 공결처리 방침에 대해 안내드리오니, 확진자의 경우 아래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개요 :

2023년 6월 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하향 조정되었으나, 우리대학은 기숙학교이며 통원진료가 용이하지 않은 지리적 환경임을 고려하고자 함

### ○ 방침 사항 :

1) 코로나19는 학사내규 제53조에 의거한 공결사유 중 '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'에 해당하며 결석허용 한계는 '해당기간'으로 규정하고 있음

2) 우리대학은 기숙형 대학인 점, 통원치료에 불리한 지리적 여건인 점을 고려하여 확진자의 충분한 회복기관 확보 및 구성원 간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지침 변경과 별개로 7일의 격리기간을 유지하고자 함.

○ 인정 기준 : 검체채취일(검사일)을 포함하여 7일째 되는 날까지 인정

○ 신청 방법 : 담당교수 확인, 공결신청서 및 확진판정 관련 증빙 서류 제출

○ 제출 및 문의처 : 교학지원처(041-731-3214, 본관 108호)

**서문성 부총장 및 총장 직무대행**